

특집 : 정보격차해소 방안 사례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¹⁾

-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



김보일

한국점자도서관 자료관리팀
boil58@hanmail.net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지금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정보가 이용가능하다(Philip Gill, 2001; 장혜란, 2002).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의 사유화, 상업화 현상이 촉진되어 정보의 사회적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있다(강혜정, 2003).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자원의 접근을 제공함은 물론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하고 활용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에게 전통적인 형태의 정보제공은 물론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인과의 정보 격차를 없애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정보이용을 위한 어떠한 불편도 제거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기준에 따라 최대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은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 접근에 있어 비장애

1) 이 글은 《김보일 (2006).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법적 근거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침이 현실적인 변화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철호와 전명현(1997), 천진희와 김혜원(2000), 강병근(2000) 그리고 유석중 외(2004)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법적 근거에 의해 개발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침은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와 향후 장애인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변화가 이용자들로부터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침이 현실적인 변화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²⁾(이하 논문이라 함)에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

서관의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 기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고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편의증진법³⁾」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을 그대로 채택한 다음에, 이 법의 항목, 세부항목, 내용을 미국의 ADAAG⁴⁾와 UFAS⁵⁾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런 다음에 「편의증진법」의 항목, 세부항목, 내용에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ADAAG나 UFAS의 항목, 세부

2) 김보일. (2006). 상계서.

3) 단, 논문이 발표된 후 편의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2호]과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3.9 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이 일부 개정되어 일부 내용은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미국 장애인법(ADA: 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작성된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ADAAG: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5) 미국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의 개축 및 보수지침서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보면 의무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점자블록, 관람석·열람석 등 이며, 권장시설은 소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대 등 이다.

항목, 내용만을 추가하여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을 작성하였다.

「편의증진법」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근린생활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보면 의무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점자블록, 관람석·열람석 등 이며, 권장시설은 소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대 등 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라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한 총 5개 영역 12개(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화장실에 포함)항목이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기타 시설의 ‘관람석·열람석과 접수대·작업대’를 장애인의 정보 이용 과정에서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비중 있는 필요한 편의시설로 판단해 다음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과 함께 설치기

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작성하였다.

첫째,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는 국내의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을 그대로 채택한 다음 미국의 ADAAG와 UFA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과 비교분석한다. 그런 다음에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ADAAG나 UFAS의 항목, 세부항목, 내용을 추가하여 기준을 작성하였다.

둘째, 서가 및 기타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도서관정보관리편람』(한국도서관협회, 1996)과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을 그대로 채택한 다음에 미국 ADAAG와 ALA⁶⁾의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세부항목,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에 『도서관정보관리편람』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미국 ADAAG와 ALA의 항목, 세

6)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부항목, 내용만을 추가하여 서가 및 기타의 편의시설 기준을 작성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은 앞서 제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비교 분석을 토대로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⁷⁾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 그리고 안내시설로 4구분하여 총 164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관람석·열람석과 작업대·접수대 그리고 서가 및 기타로 양분하여 총 21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은 총 18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실태 조사는 논문에서 제시한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토대로 「편의증진법」 제정년도(1997년)를 기준하여 그 전에 개관한 2개 공공도서관과 이후에 개관한 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

으로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편의증진법」 제정 전·후에 개관한 도서관에 적용시켜 본 결과 첫째,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법률 제정 후의 도서관 그룹이 법률 제정 전의 도서관 그룹 보다 전체적인 설치율이나 규정에 맞는 설치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법률 제정 후의 도서관 그룹이 법률 제정 전의 도서관 그룹 보다 전체적인 설치율은 동일하나 규정에 맞는 설치율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편의시설 기준의 내용과 논문에서 추가한 기준의 내용을 현장 도서관을 대상으로 적용시켜 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는 법률 제정 후의 그룹이 법률 제정 전의 그룹 보다 전체적인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후자도 법률 제정 후의 그룹이 법률 제정 전의 그룹 보다 전체적인 설치율과 규정에 맞는 설치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공공도서관은 법률제정 전·후의 개관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법률에서 정의한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편의시설 기준 내용은 보완되고

7) 김보일 (2006). 상거서.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향후 관련 법 개정시에 포함시킨다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특히,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정보 접근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수집된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공도서관에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원하는 곳 원하는 것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병근 (2000).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7권 11호, 7-16.
- 강혜경 (2003).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 이용자만족, 그리고 물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국 건축 및 교통 장애물 법규 준수 위원회 (1999). 미국장애인 편의시설상세표준도. 서울 :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미국 장애인편의시설 가이드라인: 건물 및 시설 체크리스트.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석중, 양우창, 유상환 (200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 실태조사 리스트개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55호, 77-88.
- 조철호, 전명현 (1997).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9호, 13-24.
- 천진희, 김혜원 (2000). 시각장애인의 접근, 이동에 미치는 실내환경적 요소에 관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호, 208-219.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원전은 2001년에 출판)
- 〈법률 및 지침〉
- 보건복지부 (20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PVA architecture (2002). ADAAG manual : a guide to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United States of America.



©부산뇌병변복지관 오투기도서관